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등〉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2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2
2.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개정안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의2 신설), 대기업 등이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지역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등이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근거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²⁾할 수 있도록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3호, 2026. 6. 3. 시행)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③ (생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하고 있음.

그리고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는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³⁾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음. 다만, 개별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26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으로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가 가장 높게(77.4%)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7.3%, 5.6%로 나타남.

또한,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⁵⁾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하여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순으로 응답하였는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88호, 2026. 7. 1. 시행)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 ④ (생략)

4) 소상공인연합회 보도자료, “소상공인연합회,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1.13.

5) 중소기업부,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3.31.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관련 연구보고서⁶⁾에서는 최근의 자영업 변화를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지역 여건, 노동시장 약화가 중첩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영업 비율 증가는 임금 근로 일자리의 부족 속에서 대체 일자리 및 생계유지 기능이 강화된 결과라고 보았음.

아울러, 자영업을 일률적으로 보호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지역·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자영업 정책 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자영업의 과밀경쟁 및 업종전환 압력이 높은 일부 광역시 등 지역의 경우에는 과잉진입 완화와 사업모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개정안의 취지는,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등⁷⁾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6)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2026.1.22.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

금지함으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⁸⁾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유지·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이 해당 ‘지역상권보호구역’ 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소비지출

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가로 이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성장 등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로 많은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에서의 온라인 비중⁹⁾은 2021년 이후 50%를 상회¹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1~2025) 온라인 유통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10.1%에 달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2.6%).¹¹⁾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오프라인 소비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기업 등의 사업기회를 제한하는 규제의 강도에 비해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과 유사 취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대료 급상승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지역상생구역’¹²⁾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프

9) 주요 26개 유통업체(오프라인 15개사, 온라인 11개사) 기준

10) 온라인 비중(%)(26개사 기준): ('20)48.2, ('21)52.1, ('22)53.0, ('23)53.8, ('24)56.4, ('25)59.0

11)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26.1.28.

1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

랜차이즈 등의 영업 또는 시설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인근 지역을 ‘전통 상업보존구역’¹⁴⁾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이하 생략)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 ⑨ (생략)

1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③ (생략)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
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¹⁶⁾

따라서 개정안을 통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등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중복입법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 대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 및 현행 제도의 보
완이나 개선을 통한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
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
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1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营业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
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
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
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16) 참고로, 2025년 1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음.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해당 구역에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의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에서 2029년 11월까지로 4년 연장되었음.

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은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상생 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가맹점이 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대기업 등에 사업체를 매각할 기회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지역상권 전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임.

법제처는 개정안이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이 대기업 등에 규제로 작용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또한, 안 제13조의2제2항은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의 고시 근거를 규정하면

서도 심의의 주체나 절차, 효과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심의절차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에 관한 실체규정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4(시정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

제 29 조 (벌 칙) <u><신 설></u> ① · ② (생략) <u><신 설></u>	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이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안은 안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3조의4 신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3조의5 신설), 안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 신설).

이러한 내용은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추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인바, 개정안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제도 등의 신설 여부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¹⁷⁾에서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6. 3. 시행)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위반내용 공표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벌칙 등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65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